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 연월일	2023. 11. 17.

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17.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(2023. 6. 11. 시행)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인원 및 구성 변경(안 제2조)
- 나.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 변경(안 제3조)
- 다.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명시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의사·의결 정족수 명시(안 제6조)
- 마. 회의 시 이해관계인 참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명시(안 제8조)
- 바. 위원회 참석 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,
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미반영[복지지원과-35206(2023. 9. 11.)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: 제2조(구성)제1항 ⇒ 고성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: 제2조(구성)제1항 ⇒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미반영 ⇒ 상위법에 규정되어 당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.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421호
가) 예고기간: 2023. 9. 11. ~ 2023. 10. 04.(23일간)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7인”을 “9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군수”를 “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,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: 상정 안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

2. 위촉직

가.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나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3조의 제목“(위원장의 직무등)”을“(위원장의 직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 중에서 호선된”을 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임자의 잔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고성군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<u>7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② 위원장은 <u>군수</u>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위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<u>군수</u>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관계 공무원</u> 2. <u>향토사학자</u> 3. <u>기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 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<u>같은 법</u>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9인</u> ----- - <u>이 경우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②-----<u>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----- -- <u>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</u></p> <p>③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당연직: 상정 안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</u> 2. <u>위촉직</u> <u>가.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</u>

경험이 풍부한 사람
나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삭 제

⑤ 간사는 지명위원회 업무담당
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
조사·연구·심의하게 하기 위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
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등) ①·②
(생략)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
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
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
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공
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
기는 3년으로 한다.

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
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
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
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
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
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
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-----
----- 위원장이 미리
지명한 -----

제4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--

----- 하며, 한 차례만
연임할 수 있다.

③ ----- 전임자 임
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-----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 2.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, 자료수집 및 분석
 3. 기타 지명에 관한 사항
- 제6조(회의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<신설>

제7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2. -----

3. 그 밖에 -----

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-----

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

5. 기타 중요사항

<신 설>

--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

5. 그 밖의 중요사항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를 생략함.

작성자: 열린민원과장 유 정 옥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9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지명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

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
3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

[본조신설 2023. 6. 9.]